

의안번호	2208726
의 퇴 인	이광희의원
회 답 일	2025.06.05.
추 계 번호	25C1425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】

I. 비용추계 결과

- 개정안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의무 구비 대상시설에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를 추가하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축제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여분을 보유할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2억 7,300만원, 2029년 6억 4,200만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29억 1,400만원으로 추계됨
 -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지역축제에 응급장비를 구비하도록 명시하였으나, 본 추계에서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응급장비 여분을 보유하고 이를 대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므로 향후 실제 사업 형태에 따라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
[표 1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(안 제47조의2)	2,273	-	-	642	-	2,914	583

주: 1.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응급장비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
 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47조의2 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	○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함(제1항) <u>6의4.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. 다만,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청사는 제외함</u> <u>6의5. 참여 예상 인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지역축제</u> ※ 국가는 소유자·점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음(안 제16조제2항)	의무규정

Ⅲ.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

1.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추계여부	비고(추계 미실시 사유)
1	안 제47조의2 (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)	○	○ 기시행 사업을 준용하여 추계

2.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

- 본 추계는 응급장비 설치에 소요되는 전체 비용을 추가재정소요로 추계함
- 동법 제16조제2항¹⁾에 따르면,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고, 보건복지부는 ‘응급처치 활성화 지원’ 사업을 통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비용의 50%를 국고로 지원하고 있음(2025년 기준 8억 2,200만원)
 -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에 응급장비를 설치하도록 명시하였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응급장비 설치에 대한 전체 비용을 추가재정소요로 산출함
 - － 또한 안 제47조의3제4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설치 비용은 응급장비 구비 비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가정
 - 현행 법령에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종류 및 개수 등 구비 기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본 추계에서는 기존 사업을 준용하여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로 자동심장충격기만을 고려함
 - －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응급장비의 종류 및 개수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

1)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6조(재정지원)

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.

- 개정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청사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,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축제를 위한 자동심장충격기 여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가정
 - 현재 모든 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과 시·도 청사를 제외하고,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시·군·구 청사에 설치된 청사의 개소당 설치 대수(1개소 당 3대)를 설치하는 것으로 가정
 - 지역축제의 경우, 자동심장충격기 대여사업을 수행하는 강북구 사례를 참고하여 각 시·군·구 청사에 이동용 자동심장충격기 5대를 구비하는 것으로 가정
 - 강북구는 2024년 8월부터 자동심장충격기를 소규모 단체와 행사, 개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, 2025년 5월 기준 총 10대를 보유 중
 - 강북구에 따르면, 대여용 자동심장충격기는 청사 설치분 중 사용연한(내구연한)이 임박한 기존 기계를 활용하는 것이므로 본 추계에서는 이의 절반 수준인 5개의 자동심장충격기를 신규로 구비하는 것으로 가정
 - 하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 설치 대상 시설 수와 시설 1곳당 설치하게 될 응급장비의 수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, 이 경우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달라질 수 있음
-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개정안 부칙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
- 추계 첫 해인 2026년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, 소모품은 설치 후 3년 주기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
3.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

- (신규 설치 AED 수) 개정안에 따른 각 시설 당 설치할 자동심장충격기 수를 곱한 후 기설치 자동심장충격기 수를 차감
 - (설치 시설 수) 2025년 2월 말 기준으로 청사 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가 필요한 한 지방자치단체는 51개이며, 대여용 자동심장충격기는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구비하는 것으로 가정
 - 구비 대상 시설 수는 추계기간 중 유지된다고 가정

- (시설 당 필요 AED 개수) 지방자치단체 청사 설치용 자동심장충격기는 기 설치 현황을 준용하여 개소당 3대, 대여용 자동심장충격기는 개소당 5대로 가정
 - 각 기초자치단체별 대여용 자동심장충격기 보유 여부 및 규모를 파악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본 추계에서는 전체 기초자치단체(226개)가 신규로 대여용 자동심장충격기 5대를 신규 구비하는 것으로 가정

[표 2] 개정안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현황 및
개정안에 따른 신규 설치 대수

(단위: 대)

구분	전체 개소수 (A)	시설 당 AED 개수 (B)	필요 AED 개수 (C=AxB)
청사 설치용	51	3	153
대여용	226	5	1,130

자료: 보건복지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계산

- (구비 단가) 조달청 나라장터와 보건복지부 예산 편성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청사 설치용 자동심장충격기 230만원, 대여용 자동심장충격기 170만원,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은 50만원으로 가정하여 추계²⁾
 - 추계 첫 해인 2026년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고, 소모품은 설치 후 3년 주기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
- 추계 결과,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확대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22억 7,300만원, 2029년 6억 4,200만원 등 추계기간 동안 총 29억 1,400만원으로 추계됨

2) 자동심장충격기는 업체와 모델마다 가격이 상이하나, 본 추계에서는 조달청 나라장터의 자동심장충격기 가격이 200~240만원(보관함 포함)인 점과 2024년 보건복지부 예산안 상 자동심장충격기 단가가 250만원인 점을 고려함

[표 3]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추계: 2026~2030년

(단위: 백만원)

구분 \ 연도	2026	2027	2028	2029	2030	합계	연평균
청사 설치용 AED 비용	352	-	-	-	-	352	70
대여용 AED 비용	1,921	-	-	-	-	1,921	384
소모품 비용	-	-	-	642	-	642	128
합 계	2,273	-	-	642	-	2,914	583

주: 1. 하위법령으로 정하는 응급장비의 종류 및 수량에 따라 추계결과는 달라질 수 있음

자료: 국회예산정책처

IV. 작성자

□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사회비용추계과	임슬기	이진우

□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임슬기	02-6788-4740	sg.lim@assembly.go.kr